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57th June 2013

- ▶ WHERE IS GRACE CHANG?:
Empowerment 2
- ▶ ABOUT WRITERS 2
- ▶ COVER STORY:
미국 식품 수출, 사전 준비 철저해야 3
- ▶ FTA NEWS: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준비하자 4
- ▶ VOICES FROM THE FIELDS:
휴대품 통관제도의 이해 5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6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④ 7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Empowerment



장승희
대표 관세사

오래전 인기 있었던 유행어 ‘음메 기죽어~, 음메 기살어~’를 기억하시나요? 야구 방망이를 든 일자눈썹의 부인과 그 곁에서 쪼그라드는 새신랑이 나오는 개그프로그램에서 나온 대화였지요.

2013 년의 상반기를 보내며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013 년의 경제성장율을 3.0%에서 2.6%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하면서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추세를 지속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만이 우리의 氣를 살리거나 죽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대한민국은 지난 50 년간의 초고속성장으로 세계 15 위외의 경제대국이 되어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느곳을 가든지, 지방의 5 일장에서부터 세계 최고라 하는 인천공항까지 완전한 풍요로움까지는 아니라도 예전의 찌들음은 모두 사라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까요? 대통령 방미중 발생한 청와대 대변인 사건부터 최근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9 명의 탈북 청소년들 사건까지... 오히려 ‘음메 기죽어~’에 가까운 듯 합니다. TV News 에 보이는 얼굴들은 모두 눈치만 보며 낮은 자세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수출시에 유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Cover Story 는 미국으로 식품수출시에 준비해야 할 내용이며, FTA New 는 한 • EU FTA 발효 2 년이 됨에 따라 원산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안내입니다.

또한 한 • 터키 FTA 등 새로운 관세무역법령 변경소식과 관세평가의 case study 가 있습니다.

‘氣를 살리는 것’ 즉, empowerment 가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 및 사회의 환경이 밝지 않다면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power 를 증대시켜 조직 및 사회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empowerment 는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능력/실력을 개발시킬 때 이루어집니다. 도구적, 전문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도 개발시켜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자긍심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셋째, 조직원인 개인으로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 하며 자신의 일/책임영역을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만을 탓하며 있을 수는 없습니다. Self empowered 된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을 도와주며 그 개인의 수가 늘어간다면 전체 조직 및 사회와 국가의 empowerment 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신바람 나는 사회, 기가 살아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미국 식품 수출, 사전 준비 철저해야



김혜정 관세사
kimhj@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컨설팅 전문

FTA News–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준비하자



이길준 관세사
gi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컨설팅 전문

Voices From The Fields–

현대품 통관제도의 이해



신희범 관세사
hb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김포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임보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28 기 관세사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RULINGS ㊦

물품의 손상에 따른 손상 할인의 인정여부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전략기획실 이사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Cover Story

미국 식품 수출, 사전 준비 철저해야

고추장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A 사는 용기에 영어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됐다. 대형 제조업체인 B 사와 C 사는 사탕과 치약을 수출하려다 미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다. 대형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미국의 FDA 통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이렇듯 낭패를 당할 수 있다.

2012년 3월 15일부터 한미 FTA 가 발효됨에 따라 대미(對美)수출 농식품이 품목수 기준 58.7%가 즉시 관세철폐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K-POP 을 중심으로 한 한류열풍이 미국대륙까지도 휩쓸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뜨거워지고 있다. 또한 한식이 채소류를 많이 이용하여 각종 성인병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미국내 각종 연구결과 및 보도자료에 의해 미국내에서 한식은 '웰빙음식'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 미국수입물품의 경우 국내 유통되는 물품과 동일한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기준을 요구하는 동시에 2003년 12월부터 시행중인 바이오테러리즘법상의 식품시설 등록사항 등을 요구하는 등, 식품 수출업체에게 선적 전부터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식품수출에 앞서 미국세관에서 요구하는 통관절차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미국세관에서 장기간 통관이 보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식품 수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세관의 식품 통관절차 및 FDA 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기준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이해 및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식품의 미국수출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

1. 시설등록 (Facility Registration)

2003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바이오

테러리즘법(The Bio-terrorism Act)에 의한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제조공장 및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 FDA에 의한 FCE No(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부여받는 절차이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 시설의 식품이 수입되면 시설이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되거나 FDA 지시 하에 제 3의 장소로 옮겨지도록 되어 있다.

2. 식품검사

식품의 미국수출에 있어서 식품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성분검사 및 Nutrition Facts 와 중금속 검사/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는 상기 3가지 검사를 하게되며, 제품 성분의 특징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한국은 식품에 대하여 사전규제 조치를 취하는데 반해 미국은 사후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후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때,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게 되어 수출회사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니, 식품검사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많이 수출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는 효능을 표시하는 문구가 절대 금지된다. 효능표시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건강식품제조업자는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다.

3. Label 부착

식품의 Label 부착은 의무사항이며 Nutrition Facts(성분분석표)를 검사를 통해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4. 수입자의 사전신고

식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미국세관에 반드시 사전신고(Prior

Notification of Imported Food Shipments)를 하여야 한다. 사전신고는 FDA 웹사이트(<http://www.fda.gov>)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 신고인: 미국에 주재하거나 사무실을 가진 식품의 매입자 또는 수입자, 에이전트
- 신고사항: 물품정보, 제조자와 발송자, 재배자, 원산지, 선적국가, 예상 도착항, 도착일시 등
- 신고기한: 도착예정일 5일 이전에는 받지 않으며, 기차나 비행기로 도착하는 경우 4시간 전까지, 항구로 도착하는 경우 8시간 전까지 신고.

미국세관에서 식품분야 최대 통관거부 사유는 '제조공정 정보 미등록' 이라고 한다. 통관거부 사유가 상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통관이 거부된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 미국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관련기업에서는 사전에 FDA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설등록, 식품검사 및 영문 labelling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관련기업의 미국시장에서의 선전을 기원하며, 2013년에는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강남스타일'을 기대해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정
kimhj@customsservice.co.kr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준비하자

1. 개요

한·EU FTA 발효 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느덧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어 도입 당시 품목별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가 왔다.

2. 우리나라 원산지인증수출자 현황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012년 9월말 기준 전체 5,432개 업체로 그 중 약 95%에 해당하는 5,135개 업체가 對 EU 수출기업이다. 對 EU 수출기업이 많은 이유는 한·EU FTA에서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對 EU 인증수출자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은 316개 업체, 중소기업은 4,739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2013년 기준으로 더 많은 업체가 인증 수출자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인증수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분	인증 업체 수
전체 인증수출자	5,432 개
對 EU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5,135 개

(자료출처 : 2012년 국정감사, 기준일 : 2012년 9월 말)

3. 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 및 유효기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혜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와 인증 받은 협정별, 품목에만 혜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

된다. 유효기간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경우 3년,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2년이다.

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

①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협정 적용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수출신고필증 사본 등)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한·EU FTA 적용 시 건당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EFTA 협정 적용 시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할 때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하다.

④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적용 시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관발급만 가능하다.

5.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체크 및 연장하기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인증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할 세관에 신청 해야 하고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업체별 인증 유효기간은 3년, 품목별 인증 유효기간은 2년 연장한다.

6.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인증수출자로서 누렸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또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다면 사후 검증 시 추징당할 위험이 있다.

7. 맺음말

한·EU FTA 발효 2년째인 금년 7월부터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가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라면 미리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연장이 필요한 업체는 늦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길준
gjee@customsservice.co.kr

휴대품 통관제도의 이해

1. 서론

최근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로 해외여행객이 증가함과 동시에 항공기를 이용한 휴대품 통관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를 이용한 물품 운송은 해상운송, 육상운송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운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안전성과 신속성으로 부피는 작으나 고부가가치의 물품 등이 운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품 통관에 대한 정보는 대다수의 여행객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바, 이하에서는 휴대품 통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휴대품 통관 대상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여행자는 반드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시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요청을 통해 쉽게 받아볼 수 있다. 입국 시 신고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면세범위(미화 400 불)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법으로 정하는 위해물품 등은 신고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이 있다.

총포(모의총포 포함), 도검, 석궁 등 무기류, 실탄 및 화학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아편, 헤로인,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이다.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위·변조된 유가증권 역시 신고대상이다.

또한, 동물,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물 등 농림축수산물 및 기타 식품류 및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협약 관련 제품·가공품(예:상아, 옹담 등) 신고대상

이다.

외환과 관련해서는 미화 1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도 신고해야 하는 것도 유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 역시 신고대상이다.

3. 면세범위 및 과세통관

여행자 휴대품 중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 인당 미화 400 불 이하의 면세된다. 구체적으로 주류의 경우 1 병(1L 이하, 미화 400 불 이하의 것), 담배 1 보루, 향수 60ml 는 별도 면세된다. 만약,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미화 400 불 초과 시에는 과세통관으로 진행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10 만원 이내에서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된다.

품 목	중 량
참깨, 참기름	5kg
고사리, 더덕, 꿀	5kg
잣	1kg
기타 농림축수산물	품목당 5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4. 휴대품 통관시 주의 사항

다음으로, 휴대품 통관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은 테러물품, 마약, 밀수품일 경우가 많아 본인이 모르고 대리 운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로, 과일, 식물, 씨앗 등 식물의 종자와 같이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로,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화 등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넷째로, 출국시에는 미화 1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여행자수표, 증권 등),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귀금속 보석 등 고가품은 신고하여야 한다. 출국시 신고하지 않은 고가품은 입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자진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세 30% 또는 최고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 혹여나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 개월이다.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는 경우 신한관세법인의 인천공항지사 (032-744-9961 ~2) 또는 김포공항지사 (070-4343-7737) 에 문의를 통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희 범
hbshin@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한-터키 FTA 협정 이행점검 회의 합의사항

□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 17 조(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제 5 항에 따른 터키 측의 원산지증명 사후 제출기한 : 1 년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 17 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제 5 항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 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 년" 임

□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 17 조(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제 4 항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상 '수기 서명'의 범위 : 수기서명에 전자서명도 포함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 17 조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 4 항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 직물 및 의류제품에 대한 터키측 산업 보호관세 철폐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직물 및 의류 제품 등에 대해 터키측은 산업보호 관세 (일명 domestic safeguard)를 부과하고 있으나 금번 한-터키 FTA 발효와 동시에 2013.5.1 일부로 한국산 직물과 의류제품은 산업 보호관세대상에서 제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사유

- 한-터키 FTA 협정 발효(5.1)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 명칭 변경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한-터키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 물품(별표 1 의 가) 신규 지정
 - 완두, 옥수수, 유채 씨, 대두유 등 32 개 품목
-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물품(별표 1 의 나) 신규 지정
 -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입체현미경 등 4 개 품목
- ※ 한-EU 및 한-미 FTA 협정 발효 시 용도세율 지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지정된 경우 신규 지정 또는 수정(3 개 품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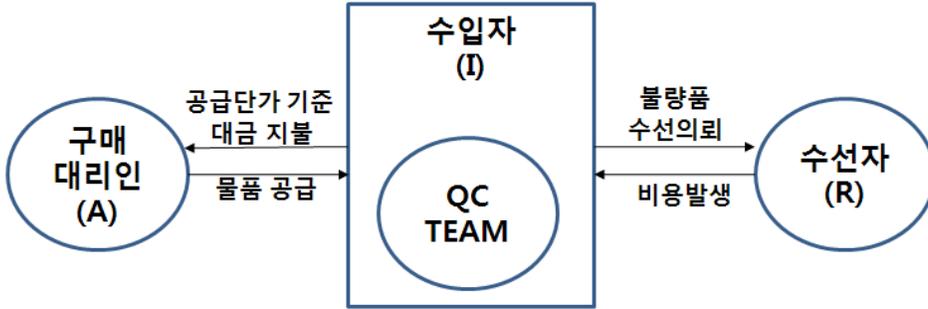
	품명	세번
1	Throttle Shaft; VSPC008749; R.KOREA	8483.10-9010
2	Frozen Okonomiyaki; PR.CHINA	1905.90-1090
3	CWDM device	8517.70-3032
4	Wine lees argol; U.S.A	2308.00-9000
5	Spring pad; R.KOREA	4016.99-1090
6	Coffee Maker; GEMINI CS100 PRO; 스위스산	8419.81-0000
7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9032.89-9090
8	Solid Ca wire; 한국산	3824.90-9090
9	FBAR(Film Bulk Acoustic Resonator) Bandpass filter	8541.60-9000
10	One(Two) AXIS GYRO SENSOR	9014.80-0000
11	엔디야그(Nd:YAG) 레이저수술기(모델명:Mercury)	9018.90-9010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㉞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물품의 손상에 따른 손상할인의 인정여부 및 인정금액의 범위

(HQ 547042 1999. 06. 17)



□ 거래사실(Facts)

- 수입자 I는 구매대리인인 A로부터 자켓(수입물품)을 공급받고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함
- I는 자켓을 수입할 때에 A에게 지불한 송품장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음
- 물품의 수입이후 I의 품질관리부서인 QC 팀이 물품검사 과정에서 불량을 발견함
- 물품명세서를 기준으로 1/2 인치 이상을 초과하는 치수불일치가 있는 경우 불량품으로 선별되며, 불량은 소매길이, 어깨사이즈등에서 발견되었음
- I는 수선자인 R을 통하여 불량품을 수선하기로 하였으며, 수선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수선 : \$ 10,766.80
 - 나. 수선공정에 대한 검사 및 감독 : \$ 1611.79
 - 다. 수선인력의 이동 : \$ 410.90
 - 라. 운반비용 : \$ 1408.50
 - > TOTAL : \$ 14,197.99
- I는 수입물품의 불량을 발견하자 전체 수령물품의 과세가격은 기존의 신고가격에서 물품의 보수, 재포장 등에 관련한 비

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 불량에 대한 근거로서 다음의 서류들이 제시됨
 - 가. 수입관련서류
 - 나. 물품명세서
 - 다. 최초 구매 ORDER
 - 라. 제품불량관련 검사보고서
 - 마. I와 A 사이에서 불량에 관하여 주고 받은 서류
 - 바. I와 R 간의 제품불량 보수계약서
 - 사. R의 송품장
 - 아. 제품불량보수에 필요한 I의 검사, 작업 지시, 운송비용 서류

□ 쟁점(Issue)

수입물품의 손상에 따라 소요된 수리 비용의 공제가능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수입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평가되었으며, 미국 관세법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작성한 의견서(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에는 "물품의 수입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공제 가능하다." 라고 명시함

또한 관세법 시행령 §158.12(a)에서 "종가세 또는 복합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수입시점에 부분적 손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상태대로(손상의 정도에 한하여 공제) 평가한다."고 규정함

그러한 공제를 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물품이 구매된 사실과, 수입된 물품의 품질이 낮음(손상,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함

I는 최초 발주한 물품(P/O, 물품명세서)과 실제로 인도한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였고, QC Report와 손상품에 대하여 I와 수출자간 내부서신들이 자켓의 손상에 대한 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됨

입증자료들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명백한 증빙자료'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빙자료에 따라 자켓은 수입시점에 손상되어 있었으며, 수입 상태대로 관세평가 되어야 함

I는 "수입시점에 부분적 손상이 발견된 물품은 수입상태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공제는 실제 수리비용에 한하여 이루어진다.”는 관세법 시행령 §158.12(a)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선비용, 내부적 비용, I와 수선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이 모두 공제되는 비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제시 하였음

세관에서는 실제 수선비용은 물품의 손상 정도에 따른 실제 수선비용에 한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전례가 있으며(HRL 5455 34), 이러한 입장은 해당 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자켓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수선비용에 한하며, 수선작업의 감독

및 관리비용, I 와 R 간의 운송비용 및 보관비용은 실제 수선비용이 아니므로 공제액 산출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결정(Holding)**

제시된 증거들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신고된 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실제 수선에 소요된 비용만으로 산출되어야 함

수선작업의 감독 및 관리비용, I와 W 간의 운송비용, 보관비용은 실제 수선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는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없음

□ **해설(Explanation)**

우리나라 관세법은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 해당되어 실제 지급금액에 의한 제 1 방법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제 6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데, 결국 미국의 사례와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